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23151 판결 [공사대금 및 사회보험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231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3596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변동걸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근

변론 종결2020. 7. 9.

판결 선고2020. 9. 1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3596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402,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남양주 C아파트 신축공사	2015. 8. 17.	108,000,000원	3,793,436원	2016. 5. 4. 위 보험료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정산계약을 다시 체결함
2	D아파트 신축공사	2015. 9. 25.	230,000,000원	7,960,479원	
3	E 신축공사	2016. 5. 3.	52,000,000원	1,785,022원	2016. 11. 25. 위 보험료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정산계약을 다시 체결함
4	화성시 F아파트 신축공사	2017. 2. 24.	157,500,000원	5,463,536원	최초 2016. 8. 10. 계약금액을 1억 800만 원으로 하여 체결하였는데, 2016. 12. 9. 계약금액을 1억 5200만 원으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와 같이 다시 변경됨
합계		19,002,473원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을 "갑 제5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 17호증, 갑 제20호증(가치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미납하였음을 전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정확하게 특정된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9행의 각 "갑 제6호증의 기재"를 각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납부액 감소시 정산한다'는 약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위반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 4, 6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합계 19,002,4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7. 6. 12. 순번4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2,780,000원과 폐기물처리비 13,100,000원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정산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7. 6. 23. 보험료 5,463,536원과 폐기물처리비 12,400,000원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169,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 4, 6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폐기물처리비 1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설 연휴 근무에 따른 특별 작업비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떠넘긴 것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 4, 6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제1호)',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제3호)',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제4호)',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정산 약정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약정 내지 합의 및 피고가 원고에게 설 연휴 근무에 따른 특별 작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가 위 각 약정 내지 합의를 한 것과 피고가 원고에게 설 연휴 근무에 따른 특별 작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1항, 동조 제2항 제1, 2, 4호 또는 제4조 제1항, 동조 제2항 제1, 2, 3, 5, 6, 8호에 위반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금 35,402,4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제1호)',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제2호)',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제4호)' 등을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1호)',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3호)',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5호)',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6호)',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제8호)' 등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현석

판사당우증

판사최정인